

1

1 ( ) ( 「 」 ) 가 ( 「 」 ) .

1. ( . )

2.

3. 1. ( ) ( 5 )

4.

가 .

1.

( , . )

2.

가

가. ( , , ) ( 777 )

. 가 ,

가

2 ( ) : ( 「 」 )

( ,가 , . ) , , , .

3 ( ) ( . )

1. , ( )

2. 가 , , 가 가

3. , 가

4. , 가

- 5. , , , , , ,
- 6. ( ( ) )
- 7. , , , , 가
- 8. ( ) 가 ,
- 9. , , , ,
- 10. ,
- 11.
- 12. , , , , , , ,

13. , ( ), , , , , , , , , ,

4 ( ) 가 가  
가 가 ( ) 1 1  
가 가 가 가  
가 가

5 ( ) 1 가  
1. , ( , , , , , , , ) 2. .

- 1. 가. 가 가 80% : 가  
가 가 가 80% : 가  
가 가 가 가 가  
가 가 가 80% : 가

$$\text{손해액} \times \frac{\text{보험가입금액}}{\text{보험가액의 } 80\% \text{ 해당액}}$$

2.

가. 가 가 :  
 . 가 가 : 가  
 . 가 가 :

$$\text{손해액} \times \frac{\text{보험가입금액}}{\text{보험가액}}$$

가 1 2. 1  
 10%

가 1 2. 1  
 10% 200

가 , 가  
 가 가 5 6 가  
 가 가

6 ( ) 1 ( ( 가 ) ) 가 ( ( 가

1.

$$\text{손해액} \times \frac{\text{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}}{\text{다른 계약과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}}$$

2.

$$\text{손해액} \times \frac{\text{이 계약의 보험금}}{\text{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}}$$

1 1. 2.

가  
 7 ( ) , 가

8 ( )

9 ( 가 ) 가 가  
 가 가

1)

가 , ,

2) , .

가

,

가 .

.

2

1 ( ) ( 「 」 ) 가 ( 「 」 ) ( )

- 1. , , , ,
- 2.
- 3.

가 .

1.

( , . )

2.

가

가. ( , , ) ( 777 )

2 ( ) 가 ( )

3 ( )

가 ( ) ( )  
( )

1. 가 ( ) ( )

2. 1. 가 ( )

24

4 ( ) ( )

1. ,

2. 가

3. , , 가 , , , , ,

4. , , (蒸), ,

5. ,

6. , , , ,

7. ( )

( ) ,

8. , , , 가

9. 가 ,

10.

11.

12.

13.

14.

( , <Fan>, )

5 ( ) 가 가  
가 가 ( ) 1 1  
가 가 가 가  
가 가

6 ( ) 1 가

- 1. 가 가 :
- 2. 가 가 : 가
- 3. 가 가 :

$$\text{손해액} \times \frac{\text{보험가입금액}}{\text{보험가액}}$$

가 1 1. 1

10%

가 1 2.

가 ,

가

가

가

가

6

7

가

7 ( ) 1

가 ( ) 가 ( 가

1.

$$\text{손해액} \times \frac{\text{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}}{\text{다른 계약과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}}$$

2.

$$\text{손해액} \times \frac{\text{이 계약의 보험금}}{\text{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}}$$

1 1. 2.

가

8 ( ) , 가

9 ( ) ,

10 ( )

1. 가 , 가 , 가

2. 가 ,

1

1

가

( 「

7 ) 가 가 가 6

7

6

가

11 ( 가 가 ) 가 가 가

1) :

2) : 가

3

1 ( ) ( 「 」 ) 가  
( ) ( 「 」 ) 가  
가 ( 「 」 ) .

1. ( . )

2.

3. , , , , ,

4.

2 ( )

가 ( ) .

.

, 1 가

.

가 ( )

.

( . ) . ,

.

( )

1 .

$$\text{지급한도율} = \frac{\text{최근 회계연도(1년간)의 경상이익} \times 1.1}{\text{최근 회계연도(1년간)의 매출액}}$$

12

3 ( )

1. , ( )  
, )



2.

3. 1

4.

5.

1.

2.

3.

4

1.

2.

5

가

6

7

가

「

$$\text{손해액} \times \frac{\text{이 계약에 의한 지급책임액}}{\text{각각의 보험계약의 지급책임액의 합계액}}$$

가

-

1)

:

가

.

.

4

1 ( ) ( 「 」 ) 가  
( 「 」 ) ( 「 」 )  
] ) .

1. 가 ( ) ( 「 」 ) ,

2. ( 「 」 ) 가

2 ( ) 가

1. , ( )

2. ,

3. , , , ,

4. ( . )  
( ) ,

가

1. ( 가 )

2.

가

3. 가 , , , 가 , ,

4. 가 가 , ,  
가

5. , ,

6. , . , ,

7. , , ,

8. 가

9. 가

10.

11. 가 가

12.

13.

3 ( ) 가

가

가

1. 가 6 1.

가

2. 가 6

2. 6

15

3. 가

4. 가 ( )

5. 가 7.

4 ( ) 가

가 ( )

1

가 ( )

가 ( )

3

, 3 3. 4.

5 ( )

1. 가

2. 3

3.

가

1. 2.

가

가

가

3.

가

6 ( ) 가

1.

2.

3.

4.

가

가

ㄱ

1.

1.

2.

2.

3.

가

3.

4.

가

7 ( 가

)

가 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8 (

)

3

9 (

)

(

(

가

)

)

(

)

가

1 ( )  
 가 ( “ ” ( ) ) ( , , , ( “ ” )  
 1 ) 가 , , , .

- 2 ( ) , .
1. .
  2. ( “ ” ) . 가
  3. ; , , ( , )
  4. ,
  5. .
  6. 가 , ( ) , .
  7. .
  8. , ,
  9. , ( , , , , , )
  10. ( ( ) ) ,
  11. 10

3 ( )  
 가 1 ( ) ( 가  
 1 ) 가  
 가 가

4 ( ) 가 1 ( )  
 가 1 ( )  
 ( 【 1】 ) ( “ ” )  
 가

20% 가  
1 180

가  
가

가 가  
4 2가 가

5 ( )  
가 1 ( )  
1 가  
180 가  
가 )  
50% 1

1 가 )  
가 )  
1 2

1.  
2. ( 가 ( “ ” ) ) 가

3. 7 (TV , , ), 가

1 2  
1 2

< >  
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 1.험의 상해 .  
장기손해 . 1.직보험으로 합니다.

6 ( )  
가 1 ( )  
1 ( ) 1 ( ) 가  
가 가  
1 ( ) 가 1





< 1 5 >

1 ( )

“ ”, “ ” “ ”, “ ” “ ” ( ) ( “ ” )  
 ) ( ) 30  
 가 가 ( )  
 , 가 ( ) 가 ( )  
 가 ( ) 가 ( )

2 ( )

가 1 가 1 ( ( )  
 ) )  
 2  
 ,

3 ( )

4 ( )

가 ( ) 4 4  
 , 가 가 ( )  
 가 가  
 2 가

- 1. 1
- 2. 6 ( )

가 가

3. 14 ( )  
6 ( )

, ( ) ( ) ( )

7 ( )

가

( )

- 1.
- 2.
- 3.
- 4.
- 5.

30

가

가

( 가 가 )

가 ( )

가 ①

1

가

( “ ” )  
( “ ” )

가

가

가

1

가

가

가

8 ( 가 가 )

가 가

가 ( )

가 ( )

( 「 가 」 )

가

가

가

( 「

9 ( 가 1 )

가

가

( )

가 ( )

( 「

」 )

가 가 가 ( )

가

10 ( 가 )

가

( )

가

( 「 」 )

8

11 ( 가 가 )

가

( 「

가

」 )

가 )

8

가 가

가 가 가

가

가 ( )

12 ( 가

)

9

가 ( )

( 「 」

)

가 가 가

가 ( )

1

가

가

(

가

」

)

가 ( )

가

가

가

13 ( )

가

가

14 ( )

가

가 ( )

가

1

1.

2.

가

5.

3.

가

가

1.,2.

15 ( )

4

5

4

5

1. 4

가

2. 5

가

가

16 ( )

1.

:

2.

:

(1

)

1

17 ( )

가

( 「

」 )

1

5

6

1

5

6

「

」 「

3

7

2

7

「

4

1.

2.

」 「

가

18 ( )

가

1. ( )

2. ( , , )

3. ( )

4.

가

가 가

가  
 19 ( )  
 3 , 10  
 20  
 가 1 가  
 가  
 2 가 가  
 가 50% 가  
 가 1  
 14 ( )

제20 ( )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.

가  
 21 ( ) 가  
 가 3 가 , 가  
 가  
 5  
 가  
 가

22 ( )  
 2 가

23 ( )  
 ( )  
 23 ( ) 12 ( )

1. , , 가
2. , , 가
- 3.

4.  
24 (        )

25 (        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,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        )가

26 (        )

27 (    가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        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  
(        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

28 (        )

29 (        )  
    가

30 (        )

( )

1 ( ) ( 「 」 ) 1  
「 」

2 ( ) 가 ( 「 」 ) 1  
2 가 ( )

3 ( 가 가 ) 가  
가 가 , 가  
가 가 1 4

:  
:

6 가 가  
4 ( 가 ) 가  
가 :

가 가  
1. 1 4 5 가

2. 1.

( ) ,

5 ( ) 1 3 가

가 , ,  
가

6 (가 ) , 가

7 ( ) , ( )  
) 682

8 ( )



1 ( ) ( 「 」 ) ( 「 」 ) 1 3 10.  
가 가 ( )

2 ( ) : 가 ( ) ( 「 」 )  
가 : 가 ( ) ( 「 」 )  
가 ( ) , 가 가 , , 가 ( )

3 ( ) 1 3 가  
1 1 가

4 ( ) 1 4 5

5 ( . ) , , 가 .  
, , , , 가 , .

가 ( )

6 ( )  
1. 가 , , 가  
가  
2. 가 , .

1  
, 1 .

가 가 ( 「 」 ) 1 5

6

1

5

6

가

7 ( )

	(1 , )	
		/
	가	/

가

1 ( )

2

4

가

2

1

가

2

1

.

1 ( )

2 ( )

-

1) :

, ,

.

1 (            )            (    ),            (            ),            ,            ,            ,            ,

2 (            )            .

-  
1)            :            ,            ,            ,            ,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.

1 ( ) 3 13.  
( ), , , , , , , , , ,  
가 1 10  
5 6 .

2 ( ) .



1 ( ) 1 ,  
, , , , ,  
.

2 ( ) .

)%

2

가

4

2.

가 (

.

( 「 」 )

가 ( ) ( 「 」 ) 1

) ( 「 」 )

3

가

1 ( )  
4. 3.

3

3

가  
가

3

3

4.

2 ( )

1 ( ) ( 「 」 ) 4  
( 「 」 ) 2 13.  
가 , 가 ( ) ,  
( 「 」 )

2 ( ) 2 가

1. , ,
- 2.
3. ( )
4. , ,

3 ( ) 1 가 가  
가  
1 , , , , ( 「  
」 )  
가

1.

4 ( ) 1.  
( ) ( ,  
)  
1.  
가

5 ( )

1 ( ) ( 「 」 ) 4  
 ( 「 」 ) 2 3.  
 )가 가 가 ( ) ( 「 」 )  
 , ( 「 」 ) , 가  
 ( . )

2 ( ) 2 ,  
 ,  
 .  
 1.  
 2. , ,  
 3. , , ,  
 4. , , 가 가  
 5.  
 , 가 2 ( 3. )

3 ( ) 「 」 「 」 .

4 ( ) 4 4  
 .  
 1. 가( 「 가 」 )가  
 --  
 2. 가 -- ×( / 가 )  
 3. 가 -- 가  
 가  
 가 가  
 4 9 .

1 ( ) 4 ( )  
「 」 ) 2 4.

2 ( ) 가 .  
( )

가 ,

3 ( ) 4  
( 가 ( )

4 ( ) .

1 ( )      4 가 ( (

2 가 (      2 가

1.      .

2.      ,      .

3.      ,      가

4.      가      가

5.      가

6.      (      ,      )

7.      .

3 (      )



1 ( )

5

1 ( ) 가 4 1 ( )  
 90 52 ( )  
 가 가 가  
 30  
 1 1

휴업손해위로금 지급액이 70,000 !인 경우의 일시금은 다음과 같으며 휴업손해위로금 지급액이 70,000

가. 제거에 의한 상실

한 개 이상의 지골(趾骨) ----- 560,000 !  
 한 개 이상의 지골(指骨) ----- 420,000 !  
 ( (指趾骨)

나. 관절의 완전탈골

엉덩이 ----- 840,000 !  
 무릎( ) ----- 420,000 !  
 족골( (趾骨) ) ----- 420,000 !  
 발목 ----- 420,000 !  
 손목 ----- 378,000 !  
 팔꿈치 ----- 280,000 !  
 어깨 ----- 210,000 !  
 한 개 이상의 지골(趾骨) 指骨 ----- 70,000 !

다. 완전골절

두개골 ----- 910,000 !  
 대퇴부 ----- 840,000 !  
 상박( ) ----- 840,000 !  
 골반 ----- 700,000 !  
 어깨뼈 ----- 560,000 !  
 다리 ----- 560,000 !  
 슬개골 ----- 560,000 !  
 쇄골 ----- 420,000 !  
 전박( ) ----- 420,000 !  
 족( (趾骨) ) ----- 350,000 !  
 손( ) ----- 350,000 !  
 아래턱( ) ----- 210,000 !  
 한 개 이상의 늑골(肋骨) 指骨 趾骨 ----- 140,000 !

가

2 ( )

1 ( ) 가 ( )  
 ( 「 」 ) 가 ( )  
 2 ( ) 1  
 2

	1	2	3	4	5	6	7	8	9	10	11	12	
2	60					40							100
4	35		25			20			20				100

1

3 ( ) 가

4 ( ) 가 2. 2  
 1

가 ( ) 7 ( )  
 가 ( )

5 ( ) 30 가

24

6 ( )

【 1】

□□

1.

1) “ ”

2) “ ”

3) “ ”

4) ,

5

20%

가

2.

“ ”

)

13

⑩

가

⑪

가

⑫

(

⑬

3.

1) 가

2가

가

2)

3)

가

□□

1.

가.

장해의 분류	지급률
1) 두눈이 멀었을 때	100
2) 한눈이 멀었을 때	50
3) " 0.02 이하로 된 때	35
4) " 0.06 "	25
5) " 0.1 "	15
6) " 0.2 "	5
7)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애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를 남긴 때	10
8) " , , 암점을 남긴 때	5
9)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	10
10)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	5

- 1)
- 2) “ ” ( )
- 3) “ ” 가 (“ ”) 가 (“ ”)
- 4) 1 가
- 5) “ ” 가 1/2 ( 가 )
- 6) “ ” “ 1/2
- 7) “ 가 ” 가 45 60%
- 8) “ ” ( )
- 9) “ ” “ 1/2
- 10) 가 가 ( 凹沒 )
- 11) “ ( ) ” 가 ( ) ” 가 ( ) ” 가 ( ) ” 가 ( ) ” 가 ( ) ”

2.

가.

장애의 분류	지급률
1)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	80
2) ,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	45
3)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	25
4)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	15
5)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	5
6)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	10

- 1) (dB : decibel) 3
- 2) “ ” 가  
90dB
- 3) “ ” 가 80dB
- 4) “ ” 가 70dB  
, 50cm
- 5) “ (ABR), ” 가 가
- 1) “ ” 가 1/2  
, 1/2 가 ( ) 가

3.

가.

장애의 분류	지급률
1)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	15

- 1) “ ”
- 2) ( )

4.

가.

장애의 분류	지급률
1)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	100
2)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	80
3)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	40
4)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	20
5)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	10
6)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	5
7) 14  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	20
8) 7  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	10
9) 5  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	5

가

- 1) (咬合),
- 2) “ ”
- 3) “ ”
- 4) “ ( , )
- 5) “ ” 4 3  
 (口, ㅂ, ㅍ)  
 (ㄴ, ㄷ, ㄹ)  
 (ㄱ, ㅈ, ㅊ)  
 (ㅇ, ㅎ)
- 6) “ ” 5) 4 2
- 7) “ ” 5) 4 1
- 8) 가
- 9) “ ” 1/3
- 10) 가
- 11) 가 가



12)

13) 가

5. ( )

가.

장애의 분류		지급률
1)	( ) 남긴 때	15
2)	( ) 남긴 때	5

1) “ ” ( , , , ), , .

2) “ ( ) ” ( ) ,

3) “ ( ) ” , , ( , ) ( )

( )

1) 1/2 ( )  
10cm ( )  
5cm  
1/2

2) ( )

3) ( )

( )

1) 1/4 ( )  
5cm ( )  
2cm  
1/4

2) 1/2 ( ),  
1/2

3)

1/2 ( )

“ ” , 12  
 8×10cm(1/2 40cm<sup>2</sup>, 1/4 20cm<sup>2</sup>), 6 11  
 6×8cm(1/2 24cm<sup>2</sup>, 1/4 12cm<sup>2</sup>), 6 4×6cm(1/2  
 12cm<sup>2</sup>, 1/4 6cm<sup>2</sup>) .

6. ( )

가.

장애의 분류		지급률
1)	( )   심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	40
2)	( )  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	30
3)	( )   약간의 운동장애를 남긴 때	10
4)	( )   심한 기형을 남긴 때	50
5)	( )  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	30
6)	( )  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	15
7)	( )	20
8)	( )	15
9)	( )	10

- 1) ( ) ( )
- 2) ( ) 가 ,  
가 .
- 3) ( ) 4 ( )
- 4) ( ) 3 ( )
- 5) ( : 1,2 ) 가  
( ) 2 ( )
- 6) ( ) 35° ( 가  
) 20° ( 가 )
- 7) ( ) 15° ( 가  
) 10° ( 가 )

- 8) 1 (가 ) (가 )
- 9) ( ) 2  
2 가
- 10) 1 ( ) ,
- 11) 가 ( ) (CT), (MRI) ( )
- 12) ( ) 가 .

7.

가.

장애의 분류	지급률
1)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	15
2) , ,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	10

- 1) “ ” , , 가 , ,
- 2) “ ” 가 2.5cm
- 가 ( ) ,
- 3) “ , 가 , ” 가 ( ) , 20°
- 4) , ,

8.

가.

장애의 분류		지급률
1)	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	100
2)	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	60
3)	3 1 손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	30
4)	3 1 손절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	20
5)	3 1 손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	10
6)	3 1 손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	5
7)	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	20
8)	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	10
9)	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	5

1)

2) ( 가 )

3) “ ” (肩關節)

4) “ 3 ”

5) “ ” 가

6) 가 3 가 가 (A.M.A.) “ 가 ”

가) “ ” ( ) “0 (Zero)”

) “ ” 가 1/4 “1 (Trace)”

) “ ” 가 1/2

) “ ”

- 가 3/4 가
- 7) “가 2 가 ” 가
- 8) “가 ” 가
- 9) “ ” 15°
- 1) 1 ( 가 ) 60%

9.

가.

장애의 분류		지급률
1)	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	100
2)	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	60
3)	3 1 !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	30
4)	3 1 !절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	20
5)	3 1 !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	10
6)	3 1 !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	5
7)	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	20
8)	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	10
9)	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	5
10)	5cm 이상 짧아진 때	30
11)	3cm 이상 짧아진 때	15
12)	1cm 이상 짧아진 때	5

1)

2) ( 가 )

3) “ ” (股關節)

4) “ 3 ”

5) “ ” 가

6) 가 3

- 가 . (A.M.A.) “
- 가 ”
- 가) “ ”
- ( )
- “0 (Zero)”
- ) “ ”
- 가 1/4
- ( ) 15mm (
- )
- “1 (Trace)”
- ) “ ”
- 가 1/2
- ( ) 10mm (
- )
- ) “ ”
- 가 3/4
- ( ) 5mm (
- )
- 7) "가 " 가
- 2 가
- 8) "가 " 가
- 9) " " 15°
- 10)

(bony landmark)  
scanogram

- 1) 1 ( 가 )
- 60%

10. 가

가.

장애의 분류	지급률
1) 5  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	55
2)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	15
3) (1 )	10
4) 한손의 5  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	30
5)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	10
6)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(1 )	5

- 1) 가 가 2 가 . 가
- 2) , 가 3 가 . 가
- 3) “ 가 ” 가 가
- 가 , 가 1 ( ) 2 ( ) 가
- 4) “ 가 ” 가 , 가 1 ( ) 가
- 5) “ 가 ” 가 가 가
- 1/2 가 가 가 1, 2
- 1/2 .

11. 가

가.

장애의 분류	지급률
1)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	40
2) 5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	30
3)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	10
4) (1 )	5
5) 5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	20
6)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	8
7)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(1 )	3

- 1) “ 가 ” 가 ,  
가 1 ( ) 가
- 2) -
- 3) “ 가 ” 가 , 가  
1 ( ) 가
- 4) “ 가 ” 가  
가 1/2 가 , 가 가

12.

가.

장애의 분류	지급률
1)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	75
2)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	50
3)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	20

- 1) “ ”

가 가



- 2) “ ”  
 ,  
 3/4
- 3) “ ”  
 , , ,  
 50cc 가  
 1/2 가  
 ( )
- 4) “ < > (ADLs) 가 ” 가
- 5) ( , ) 가

13.

가.

장애의 분류	지급률
1) 신경계에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	10~ 00
2)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애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 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	100
3) 정신행동에 심한 장애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	70
4) ,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	40
5) : CDR 5	100
6) : CDR 4	80
7) : CDR 3	60
8) : CDR 2	40
9)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	70
10)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	40
11)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	10

- 1) “ ” ,

“< > (ADLs) 가 ” 5가  
 10% “< > (ADLs) 가 ”  
 가 ( , , , , )  
 , , 6  
 6 가 .  
 6 가

2)

(ADLs) 가 ” “< >  
 24 . ,  
 1 18  
 ,  
 가 가  
 가  
 -  
 -  
 - 가 ( SPECT )  
 - 가 가  
 가  
 ), , ( ) , , , ( )  
 가

3)

“ ”

-

-

가

가

( Expanded Clinical

Dementia Rating)

.

4)

“ ”

( ,

)

“ ”

8

6

,

,

,

,

,

,

가

“ ”

5

10

6

“ ”

1

2

6

“ ”

가 3

“ ”

가

3

(ADLs) 가

유형	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
이동동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법을 나올 수 없는 상태( 40%)</li> <li>- walker (30%)</li> <li>- ,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,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(10%)</li> </ul>
음식물 섭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(20%)</li> <li>-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(15%)</li> <li>-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(10%)</li> <li>-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(5%)</li> </ul>
배변 배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(20%)</li> <li>- ( ) 후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(15%)</li> <li>- ,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(10%)</li> <li>- 2 ( , , 교육 등) (5%)</li> </ul>
목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10%)</li> <li>- (5%)</li> <li>- ( ) (3%)</li> </ul>
옷입고 벗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10%)</li> <li>-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없이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(5%)</li> <li>- ( , 지퍼 올리고 내리기, ) (3%)</li> </ul>